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을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종류

-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 2 「관광진흥법」에 따른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유원시설**
-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환승역(換乘驛)인 도시철도의 **역사**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 5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이용시설**
-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 한다)
-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이거나 프로스포츠클ubs가 개최되는 **전문체육시설**
- 9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시설 또는 장소
-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 1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장소** 중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장소
- 12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조치사항

- 1 시설·장소특징을 고려한 자체 지침 마련 가능
 -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소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설·장소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시설·장소의 특징을 고려한 자체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 2 실종아동등 발생사실 기록·관리
 - 신고자 등으로부터 실종아동 등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 특징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 접수서에 기록·관리
- 3 실종아동등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 실종아동등 발생사실 접수 시 즉시 안내방송으로 그 상황을 시설이용자에게 전파하고 경보 발령
- 4 시설 출입자 감시 및 수색 실시
 - 시설의 출입구에 신속하게 종사자를 배치하여 출입자 감시 및 시설 내 장소 및 공간에 대한 수색 실시 등 조치 이행
- 5 실종아동등 미발견 시 경찰에 신고조치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자체 조치 후에도 미발견 시 보호자 동의하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종아동등 발생사실 신고
- 6 경보발령 해제
 -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발령된 경보 해제조치
 - 실종아동등을 미발견 시 경보발령의 지속여부는 관할 경찰관서 장의 의견에 따라 결정
- 7 자체 교육·훈련 실시 및 결과 보고
 - 실종아동등 발생사실 신고접수 요령, 상황 전파 및 경보 발령, 출입자 감시 및 수색 실시 등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
 -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 (벌칙)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100~400만원의 과태료 차등 부과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이렇게 바꿉니다.

2017년 7월,
주요 개정내용 안내



그린의 희망

그린 리본은 실종아동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희망과 바람의 상징입니다.



1. 개정 사유

'14.7월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한 이래, 그간 실제 지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

2. 개정 내용

-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자체 지침 마련 의무를 완화(관리주체의 선택에 따라 마련여부 결정)
 -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 시) 관리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하여 고시한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 관리주체가 자체 시설·장소의 특징을 고려한 자체 지침을 별도 마련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마련하도록 기한 정비
- * 시설 등의 허가·등록 이후 자체 지침 마련 시 까지 상당기간의 공백이 발생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관리주체의 대응조치 미비
-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시설 내에서 발생한 실종아동등의 발생 사실을 신고서에 기록을 유지·관리하도록 서식 정비
-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자체 조치상황에 따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 * 자체 조치 불가능 → 조치 곤란 또는 불충분한 경우에 즉시 경찰 신고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찰 개입 시 관리주체가 경찰 의견에 따라 시설 내 경보발령의 지속여부를 결정
-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또는 자체 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안내방송, 경보 발령, 출입자 감시 등 자체 교육·훈련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서식 마련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을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종류

-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 2 「관광진흥법」에 따른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유원시설**
-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환승역(換乘驛)인 도시철도의 **역사**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 5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이용시설**
-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 한다)
-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이거나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전문체육시설**
- 9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시설 또는 장소
-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 1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장소** 중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장소
- 12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조치사항

- 1 시설·장소특징을 고려한 자체 지침 마련 가능
 -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소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설·장소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시설·장소의 특징을 고려한 자체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 2 실종아동등 발생사실 기록·관리
 - 신고자 등으로부터 실종아동 등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 특징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 접수서에 기록·관리
- 3 실종아동등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 실종아동등 발생사실 접수 시 즉시 안내방송으로 그 상황을 시설이용자에게 전파하고 경보 발령
- 4 시설 출입자 감시 및 수색 실시
 - 시설의 출입구에 신속하게 종사자를 배치하여 출입자 감시 및 시설 내 장소 및 공간에 대한 수색 실시 등 조치 이행
- 5 실종아동등 미발견 시 경찰에 신고조치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자체 조치 후에도 미발견 시 보호자 동의하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종아동등 발생사실 신고
- 6 경보발령 해제
 -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발령된 경보 해제조치
 - 실종아동등을 미발견 시 경보발령의 지속여부는 관할 경찰관서 장의 의견에 따라 결정
- 7 자체 교육·훈련 실시 및 결과 보고
 - 실종아동등 발생사실 신고접수 요령, 상황 전파 및 경보 발령, 출입자 감시 및 수색 실시 등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
 -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 (벌칙)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100~400만원의 과태료 차등 부과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이렇게 바꿉니다.

2017년 7월,
주요 개정내용 안내



그린의 희망

그린 리본은 실종아동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희망과 바램의 상징입니다.



1. 개정 사유

'14.7월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한 이래, 그간 실제 지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

2. 개정 내용

-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자체 지침 마련 의무를 완화(관리주체의 선택에 따라 마련여부 결정)
 -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 시) 관리주체는 보건 복지부장관이 마련하여 고시한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 관리주체가 자체 시설·장소의 특징을 고려한 자체 지침을 별도 마련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마련하도록 기한 정비
- * 시설 등의 허가·등록 이후 자체 지침 마련 시 까지 상당기간의 공백이 발생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관리주체의 대응조치 미비
-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시설 내에서 발생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사실을 신고서에 기록을 유지·관리하도록 서식 정비
-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자체 조치상황에 따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 * 자체 조치 불가능 → 조치 곤란 또는 불충분한 경우에 즉시 경찰 신고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찰 개입 시 관리주체가 경찰 의견에 따라 시설 내 경보발령의 지속여부를 결정
-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또는 자체 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안내방송, 경보 발령, 출입자 감시 등 자체 교육·훈련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서식 마련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에 따른 단계별 조치 내용(예시)

- 1 실종아동 발생 보호자 등 신고**
 - 조기발견지침 적극 홍보 시설 이용자 등의 신속한 신고 유도
- 2 상황 최초 접수자**
 - 실종아동 인상착의 뿐만 아니라 신고자(보호자)의 성명 및 연락처도 간략히 확보
 - 납치 등 범죄가능성 파악
- 3 일원화된 접촉창구로 상황전파**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관리자는 보안실에 정위치 근무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경보 발령 지시 (방송실 등)
 - 신고된 장소 주변 및 출입구 CCTV 집중감시
- 4 상황전파 (경보 발령)**
 - 전 직원 및 시설이용자(고객)에게 신속히 전파
 - 시설이용자에게 고객안내방송 등 (안내방송 불가 시, 전광판 표출 등)을 통한 정보 전파



- 5 인원 배치, 출입구 감시 및 수색**
 - 출입구에 안전관리요원 등 배치 (필요시 일부 출입구는 폐쇄가능) 및 시설 내·외 CCTV 수색 병행
 - 정해진 한계시간 내 담당구역 모두 수색
 - 시설이용객에게 대한 충분한 설명과 수색에 대한 협조 요청
- 6 실종아동 등 미 발견시 경찰신고**
 - 실종아동 등 미발견시 지침 관리 부서(보안실 등)는 시설관리주체 또는 담당부서의 지시 하에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
- 7 경찰 도착 후 경보발령 해제여부 검토**
 - 경찰의 수색 등 요청사항에 대해 시설 관리주체는 최대한 협조
 - 경보 발령 해제는 경찰의 의견에 따라 해제여부 결정
- 8 경보발령 해제**
 - 전 직원 및 시설 이용자에게 경보 발령 해제사실을 신속하게 전파
 - 실종아동등 발생 시부터 경보 발령 해제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기록 유지·관리 및 필요시 경찰 등 관련기관과 정보공유

다중이용시설 담당부서/근무자별 역할(예시)

- 관리주체(보안부서 등 담당부서장)**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 책임(자체교육훈련 실시 포함)
 - 상황 접수 후 총괄 지휘(경보 발령 및 해제, 수색, 경찰신고 지시 등)
- 실종아동 발생 사실 최초 접수자**
 - 실종아동에 관한 인상착의 정보 확보 (신고접수서에 기록 유지·관리) 및 담당부서(예시, 보안실 등)에 연락
 - 신고한 보호자등과 같이 정위치(보호자 요구 시, 연락체계 확보 후 주변부터 수색 가능)
 - 납치·유괴 등 범죄관련 실종 가능성을 판단
- 방송실**
 - 보안담당부서 근무자로부터 접수된 실종 아동 발생사항을 시설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안내방송 실시
 - 실종아동 발견 등 경보 해제 시, 경보발령 해제내용을 시설이용자 등 고객에게 안내 방송 등 실시



보안담당부서

- 실종아동등의 신체적 특징 또는 인상착의 확인 및 기록 → 범죄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
- 시설종사자 등 자체 직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경보를 발령하여 당초 지정된 업무를 역할분담하여 수행토록 함
- 방송실에 경보 발령사실을 통보하여 시설 이용자 등 고객 안내방송 실시 등 지시 (전광판 또는 애플리케이션 등 모든 수단 포함)
- “시설 관리주체 또는 해당 부서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을 것
- 시설 내·외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종아동등 찾기 실시
- 실종아동등 미발견 시 경찰에 신고 및 출동시 경찰과의 업무협조 채널 역할 수행



수색팀 또는 시설종사자

- 시설 내 해당 구역을 정해진 시간 내에 완전 수색(보안담당부서와 상시 유·무선 연락체계 확립)
- 연결된 주차장 뿐만 아니라 주변 통로까지 완전 수색
- 시설 출입구의 출차 차량에 대한 확인
- 실종아동 발견 시, 보안담당부서 보고 후 보호자에게 인계
- 실종아동이 보호자 이외의 사람과 있는 경우 신원확인 및 보안담당부서 통보
- 시설이용자의 불편이나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충분한 설명 및 수색 등에 협조 요청